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비학위과정 환불기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며, 그 기준은 아래 반환기준에 따른다.

1.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및 본인통장사본 각 1부**
2. **제출방법 : E-mail 또는 FAX (E-mail : kyonggiedu@kgu.ac.kr / FAX : 02-364-0748)**
3. **소 요 일 : 신청서 제출 후 1-2주 이내 처리**
4. **주의사항 : 환불신청서에 본인 서명을 반드시 기재**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과정 중 환불시 수업참여 여부 및 등록시기와 관계없이 반환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KGU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